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1251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2.11.21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11.06

『타코in카페』 정 보 공 개 서

타코in카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타코in카페 가맹본부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39-1, 1층 (가락동)		
대표전화	010-5627-0815	대표 F A X	-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4306-0815	대표 메 일	moons7777@naver.com



<제목 차례>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타코in카페』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타코(in) 카페	타코in카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39-1, 1층 (가락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9.08.30	이혜민	010-5627-0815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38-53-00391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타코in카페』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칭	『타코in카페』	-
상호	『타코in카페』_____점	가맹점 명
상표		40-2022-0198862 2022년 11월 01일 출원
기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0,853	3,704	27,149	283,431	22,804	26,261
2022년	35,788	443	35,345	350,940	25,938	30,920
2023년	33,437	4,517	28,920	393,948	16,797	20,81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 경력		
			기 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혜민	대표	2019.08.30.~현재	타코in카페 가맹본부 대표	가맹본부 경영 프랜차이즈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이미지	권리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타코in카페		상표 (43류)	(출원) 40-2022-0198862 2022년 11월 01일 (등록) 40-2207-3870000 2024년06월11일	이혜민	2034.06.1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내용은 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타코in카페』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점 시작일(2023.01.03.)

직영점 시작일(가락본점 : 2019. 08. 30)

2. [타코in카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타코in카페	타코in카페	이혜민	가맹사업 준비중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길 39-1, 1층

3. [타코in카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타코in카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식	타코야끼, 커피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타코in카페』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	-	1	1	-	1	9	8	1
서울	1	-	1	1	-	1	2	1	1
부산	-	-	-	-	-	-	0	0	0
대구	-	-	-	-	-	-	0	0	0
인천	-	-	-	-	-	-	0	0	0
광주	-	-	-	-	-	-	4	4	0
대전	-	-	-	-	-	-	0	0	0
울산	-	-	-	-	-	-	0	0	0
세종	-	-	-	-	-	-	0	0	0
경기	-	-	-	-	-	-	3	3	0
강원	-	-	-	-	-	-	0	0	0
충북	-	-	-	-	-	-	0	0	0
충남	-	-	-	-	-	-	0	0	0
전북	-	-	-	-	-	-	0	0	0
전남	-	-	-	-	-	-	0	0	0
경북	-	-	-	-	-	-	0	0	0
경남	-	-	-	-	-	-	0	0	0
제주	-	-	-	-	-	-	0	0	0

5. 최근 3년간 『타코in카페』가맹점 수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8	-	-	-	8

6. 『타코in카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타코in카페]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2당	상한	면적 3.3㎡2당	하한	면적 3.3㎡2당	
전체	8	-	-	-	-	-	-	-
서울	1	-	-	-	-	-	-	-
부산	0	-	-	-	-	-	-	-
대구	0	-	-	-	-	-	-	-
인천	0	-	-	-	-	-	-	-
광주	4	-	-	-	-	-	-	-
대전	0	-	-	-	-	-	-	-
울산	0	-	-	-	-	-	-	-
세종	0	-	-	-	-	-	-	-
경기	3	-	-	-	-	-	-	-
강원	0	-	-	-	-	-	-	-
충북	0	-	-	-	-	-	-	-
충남	0	-	-	-	-	-	-	-
전북	0	-	-	-	-	-	-	-
전남	0	-	-	-	-	-	-	-
경북	0	-	-	-	-	-	-	-
경남	0	-	-	-	-	-	-	-
제주	0	-	-	-	-	-	-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POS 등 매출액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기 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구두상 매출액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있어 옳바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재에 생략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타코in카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2	8	25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2023년 한 해 동안 『타코in카페』와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온라인 등	(비공개)	2023 한 해	2,509	2,509	0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거여동지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1	02-448-45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리은행] 또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https://www.wooribank.com/>)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 사업자등록번호나 [타코in카페]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나 예치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귀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는 예치해야할 가맹금액을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① 귀하가 [타코in카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당사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당사	예치	확정 금액
주방설비	지정업체(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기물	지정업체(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간판, 사인물	지정업체(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덕트, 후드	지정업체(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인테리어	지정업체(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기타 소모품	지정업체(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초도물류비	지정업체(미지정)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최초 가맹금>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액	가맹금반환여부	지급기한	비고
가 맹 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한 대가	₩2,200	가맹사업시작 후 소멸	계약체결 후 즉시	-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의 대가	₩1,100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비	기타 가맹점 오픈 시 발생하는 경영지도 및 교육비	₩1,100	가맹점 오픈시의 경영지도 및 교육 후 소멸	계약체결 후 즉시	-
합 계		₩4,400	-	-	-

※ 귀하가 『타코in카페』 운영권을 기존 『타코in카페』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양수받는 경우에 당사는 귀하에게 별도의 가맹비를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수 전 반드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대가로 금 일백일십만원(₩1,100,000)<부가세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 일백만원(₩1,000,000) <부가세없음>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내역

- ①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이행과 당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이나 손해배상액 등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일백만원(₩1,000,000)을 가맹계약 체결 당일 내에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기타 제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으며 부족시 보충을 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귀하의 당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대금지급의무 등 가맹계약상의 당사에 대한 귀하의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가맹계약서의 제38조상의 귀하의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가 완료된 시점에서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 ④ 귀하는 가맹계약서 제38조상의 의무를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에게 동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이행여부에 대한 실사 후 이상이 없을 때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 후 정산내역서와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 오백사십만원(₩5,400,0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합계	₩5,400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2,200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의 대가	₩1,100
기타 가맹점 오픈 시 발생하는 경영지도 및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 (VAT 없음)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및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33㎡ [10평]기준, VAT포함)

내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자율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15,000	1,500	별도 계약 후 3일 이내 계약금/중도금/잔 금으로 나누어 지급	시공 3일전 계 약취소 /단 계 약금은 불반환	주방설비 포함
간판, 사인물	자율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1,500	-	별도 계약 후 3일 이내	시공 3일전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기물	자율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3,000	300	별도 계약 후 3일 이내	공급 3일전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가구	자율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2,000	-	계약 후 3일 이내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기타 소모품	자율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2,000	-	계약 후 3일 이내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초도 물류	당사 또는 지정업체(미지정)	1,000	-	계약 후 3일 이내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합계		24,500	-	-	-	-

※ 비고

- ① 인테리어공사 등에 사용된 비용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은 인테리어업체와 귀하가 협의한 날짜에 결제하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계약시점, 총액의 40%입금
 2. 중도금: 공사착공 5일 후 총액의 40%입금
 3. 잔금: 오픈3일전 총액의 20%입금
- ② 해당 금액표시와 합계는 가맹점 개설을 위한 해당 내용의 단순 합계금액으로서 표시되었으



므로 가맹점 점포의 크기 및 귀하의 선택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가맹점포 시장성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가 직접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시는 경우에는 **3.3㎡당 220,000원(부가세포함)의 감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내역 및 금액은 당사의 경영사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별도사항

- ① 철거, 폴딩도어, 추가 간판, 전기증설, 가스, 냉난방기, 소방, 화장실, 어닝, CCTV, POS, 인허가, 테라스 등의 시공은 별도금액으로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초도물류비

- ① 귀하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초도물류를 충분히 비치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초도물류비 명목으로 **금 일백만원(₩1,000,000)<VAT포함>**[점포의 면적에 비례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당사 또는 지정업체(미지정)에 물품공급 3일전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점포의 면적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초도물류의 경우 개봉을 하는 즉시로부터 물품의 상태가 급격히 변질되어 재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을 개봉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없으며, 영업개시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물품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도 야채나 과일류처럼 급속하게 상태가 변하는 품목은 수령 후 2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와 최종 합의 후 가맹희망자 최종결정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의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채용기준	계약·채용 조건
가맹점사업자	제한이 없음	· 교육이수자	·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 · 기타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피고용인	제한이 없음	· 용모단정	· 만 19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맹금 납부의 또 다른 규정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귀하께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광고분담금	당사	V.8 규정에 따름	광고 실시 전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후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행사 실시 전	행사 실시 전	행사 실시후
교육훈련비 (수시교육)		실비 / 1인 6H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반환	교육 개시 후
교육훈련비 (특별교육)		실비 / 1인 6H			
교육훈련비 (재교육비)		실비 / 1인 6H			
특별 경영지도비		실비 / 1인 6H	경영지도 개시 전	경영지도 개시 전 전액반환	경영지도 개시 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지정업체(미지정) 또는 직접 시공	범위에 따라 다름	교체.보수 공사 시작 전	공사 시작 전	공사 시작 후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정업체(미지정) 또는 직접 시공	공사범위에 따라 당사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시작 전		
자연이자	당사	연12%	지급기일 다음날 부터 원제일까지		

② 광고비의 부담은 광고와 홍보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국단위의 상품광고 및 가맹점모집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를 포함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당사가 50%를 부담하고, 귀하를 포함하는 가맹점사업자가 50% 비율로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점모집광고만의 경우는 당사가 전액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은 각 가맹점의 광고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총매출액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 귀하께서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단독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



그 등의 제작은『타코인카페』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귀하의 비용으로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귀하는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당사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한다.)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계약은 1년 기본단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이러한 자동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당사는 귀하에게 별도 비용 부담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타코in카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적 자격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전 반드시 본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사는 양수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양수인은 당사로부터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대가로 금 일백일십만원(₩1,100,000)<부가세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금 일백만원(₩1,000,000)<부가세없음>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브랜드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아래의 각 항의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귀하께서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간판 등 제반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② ①의 철거 또는 제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귀하께서는 기타 당사의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셔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④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귀하께서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과 기타 귀하께서 당사에게 납부할 비용 일체를 현금으로 완제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께서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가맹점 운영 규칙,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을 당사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 ⑥ 귀하께서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⑦ 귀하께서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귀하께서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어 귀하는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타코in카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① 귀하께서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계				

상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및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타코in카페]**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타코in카페]**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기]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역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② 귀하가 위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법령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의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고객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 업체	가맹사업과 관련 된 상품·용역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 또는 하청 줄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와 주문 편성의 즉시 중단 2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 가능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물품 등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①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귀하가 다음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단위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기] 참조		EA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2022. 12월말 기준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타코야끼 및 커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타코in카페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원칙: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기준 사방 0.5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예외: 아래의 경우와 같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 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 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 병원상권 등) 5. 제4호와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또는 식당가 등	

3) 가맹계약 갱신(재계약)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의 함 , 합의를 거친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 상기한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 · 분할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되어 (가맹사업법 제12조 ①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 다목.)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당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타코in 카페』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타코in카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관여하지 않고있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합한 비율을 기재드립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타코in카페』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재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	----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7조 제②항>

다음 가맹계약서상의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②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본 계약상의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을"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장 또는 점포·설비 등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을"의 가맹사업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방식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갑"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37조
○ "을"이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7조
○ "을"이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제37조
○ "을"이 제41조나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③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37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제3항제1호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 등으로 지불정지가 된 경우	제37조 제3항제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 제3항제3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7조 제3항제4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항제5호
○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항제6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7조 제3항제7호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7조 제3항제8호
○ 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 제3항제9호

- ④ 당사가 다음 표의 행위를 한 경우 귀하는 당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파산·화의 등의 신청을 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제2항제1호



○ 당사가 발생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제37조 제2항제2호
○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 제2항제3호
○ 당사가 부당하게 본 계약에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물품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2항제4호
○ 당사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7조 제2항제5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합의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계약서 제5조)
-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계약서 제6조)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계약서 제44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계약서 제44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5조
○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4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44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는 양수인의 자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출 것 ○ 양수인이 교육비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가능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 ① 귀하는 제3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위탁경영 등을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당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 받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상의 귀하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법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직계 존·비속에게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3. 동업자간의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단 최초가맹계약서에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5.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6.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에 승인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제2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사의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당사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제3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게 완납하고 교육 및 인·허가 사항 등의 가맹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당사는 양도·양수를 최종 승인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양수인 또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최초 가맹비를 면제합니다.
- ⑥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⑦ 귀하께서 대표자의 명의변경없이 점포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전승인의 요청시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⑧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수·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자의 손실 및 법정 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의 대리행사 또는 위탁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맹점운영의 대리행사나 위탁은 원칙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 또는 대리행사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을 포함)이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또는 성년후견 개시시 그 상속인또는 성년후견인은 상속 개시일 또는 후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의 승계의 의사를 당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양수도의 승인에 관한 절차규정을 상속절차에 준용합니다.
- ④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제반 권리를 보유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의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당사의 승인을 얻어 상속 또는 후견개시를 한 경우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하되,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교육은 이수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피상속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당사의 승낙 없이 귀하(직계가족을 포함합니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타코in카페』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귀하가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타코야끼 및 커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① 당사는『타코in카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원칙적으로 월 26일 이상 개점합니다.	문의: 당사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 영업시간 조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한 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직접 근무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②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타코in카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판촉 계획 공고 → 각 가맹점별 부담액 제시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 당사에 지급 →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역서 교부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귀하는『타코in카페』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하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경업금지의무) 및 제3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금 오천만원(₩50,000,000)**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도 계산하되 그 비율은 12%로 합니다.
- ②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중도 해지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과 별도로 귀하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귀하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부가세 별도) x 10% x 잔여기간(월)]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배상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 ③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와 귀하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로열티,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①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일 정도(본계약 체결 후 4주)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개설절차





(단위: 천원, VAT 포함/40m² 기준)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상담 문의	-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즉시	[13P~15p] 참조
시장분석 및 점포개발	유동인구분석, 거주자분포현황, 업종분석, 경쟁업소분석, 지역분석, 상권확장분석	7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납입(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투자비 산출	- 인테리어/설비공사 및 홀·주방 설비/집기 주방공사설비 등 완료시 지급 .계약금: 계약시점 총액의 40%입금 .중도금: 공사시작 5일 총액의 40%입금 .잔 금: 오픈 3일전 총액의 20%입금 .정 산: 오픈 7일 후 가감액 정산 - 초도물품 등 물품공급시 지급	1일	
인테리어 시공	- 목공, 전기, 도장, 설비, 도배, 바닥, 후드 등	21일	
개점 전 교육	- 메뉴교육, 위생교육, 이론교육, 서비스교육	7일	
주방설비 및 집기 입고	- 냉동고, 테이블냉장고, 간택기, 레인지, 닥트 조리대, 작업대, 싱크대 등 주방 설비 일체, 주방집기 및 홀 집기 일체	7일	
오픈 리허설	- 최종점검 및 리허설	1일~3일	
오픈	- 개점 및 영업개시	-	

②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① 당사와 귀하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
-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
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각
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합니
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 오픈시 제공되는 오픈지원인력, 홍보물, 판촉물 등은 모두 유상으로 특별히 무상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동판촉 및 개별판촉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판촉 행사시 귀하와 개별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품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경영지도 내용 등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사전에 제시 → [7]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활동 →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통상적인 가맹점 경영지도 외 가맹점사업자가 특별 경영지도 요청시 경영지도담당자	문의: 당사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타코in카페』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교육·훈련종류	이수여부	최소시간	비 용	피교육자	불참시 불이익
개점 전 교육	강제	56시간	1,100 (1인 기준)	- 가맹점사업자 - 직원	- 개점지연 - 계약해지
수시교육	강제	1일 (6H)	100 / 6H (1인 기준)		- 계약해지 - 상품공급중단
특별교육	강제	1일 (6H)	100 / 6H (1인 기준)		- 계약해지 - 상품공급중단
재교육	강제	1일 (6H)	100 / 6H (1인 기준)		- 계약해지 - 상품공급중단

- ① 개점전교육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의 교육, 가맹점 운영 규칙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하며, 귀하께서는 귀하나 귀하의 피고용인을 위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점 전 교육 과정 중에는『타코in카페』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당사가 정한 장소에서의 소정의 교육 · 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② 수시교육은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③ 특별교육이란 신메뉴 개발 등 필요에 의하여 귀하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때 귀하께서는 당사에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타코in카페』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1의 표와 같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원 등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가맹계약서 제19조에 따라 가맹점 개점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에 따라 당사에 의해 가맹점 개점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가락본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39-1, 1층 (가락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584일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92,9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 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 또는
 - ②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최근3개년도의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3] 가맹점 현장 점검표

가맹점 현장 점검표

* 가맹점명 :

* 점검일 : 년 월 일

* 점검인 :

구분	관리항목	관리상태					비고
		매우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우수	
1	복장(청결, 착용)						
2	장비관리상태(청결)						
3	장비보유(장비구축)						
4	가맹점유지상태(청결)						
5	청소상태(품질관리)						
6	검수시 고객응대태도						
7	서비스 시간(시행력)						
8	레포트 작성(절차준수)						
9	고객지시사항 이행(서비스)						
10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						
11	A/S 처리(사후관리)						
12	레포트 관리(품질관리)						
13	재고관리(입/출고관리)						
14	청소 방법(품질관리)						
15	A/S 발생횟수(품질관리)	5회	4회	3회	2회	1회	
점수							

* 매우불량 : 2점 , 불량 : 4점, 보통 : 6점, 우수 : 8점, 매우우수 : 10점

* 점수 총합을 150점으로 하며 평균점인 75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가맹점의 경우 주문 또는 기타 다른 사항에 있어서 소정의 패널티와 함께 본사 집체보수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한다.

* 점검표는 본사와 가맹점 상호가 각각 확인 후 소지하도록 한다.

확인자 서명 :

(인)



[별첨4]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직영점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명	주소	전화번호



[별첨5]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부재료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6] 가맹점 집기 품목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기]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 및 권장가격

1400*600

TACOYAKI

오리지날
약간 매운맛

소	중	중	대
8알	14알	22알	28알
4.5	7.5	12.0	16.0

오리지날 믹스 (하니버터+갈릭+뿌링클)
매콤갈릭맛
매콤치즈맛 (나쵸치즈)
뿌링뿌링클맛
와사비마요맛
더블치즈맛 (엑상치즈+엔젤헤어)
카레맛
청양마요맛

5.0	8.0	13.0	16.0
-----	-----	------	------

달콤매콤맛
까르보볼닭맛

5.5	8.5	14.0	17.0
-----	-----	------	------

네기(대파) 타코야끼
리얼양파맛
아삭타코야끼 (아삭토스트맛)

14알	22알
7.5	15.0

COFFEE

- 아메리카노 3.5
- 카페라페 4.0
- 카페모카 4.5
- 카라멜마끼아또 4.5
- 초코라페 4.5
- 바닐라라페 4.5
- 블루베리라페 4.5
- 딸기라페 4.5
- 녹차라페 4.5

BEVERAGE

- 식혜 3.5
- 아이스티 4.0
- 딸기에이드 4.5
- 자몽에이드 4.5
- 청포도에이드 4.5
- 레몬에이드 4.5
- 체리콕 4.5
- 스파클링애플쥬스 4.5

라코 in 카페 수제 타코야끼 전문점

두가지맛
선택가능

14알 : 원박스에 두가지맛
22알 : 한박스+한박스 파로 따로
28알 : 원박스+원박스 파로 따로

타코 in 카페 수제 타코야끼 전문점

동기치팅
선택가능

14알 : 한박스에 두가지맛
22알 : 한박스+한박스 파로파로
28알 : 한박스+한박스 파로파로



